노·무·상·담

공인노무사 **강경만**

Q 부당 해고 구제명령 확정사건에 대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위반으로 처벌가능한지 여부

A 근로기준법 제33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벌을 한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구제신청과 심사절차에 대하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내지 제86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 제85조 제3항에 의거 확정된 구제명령에 위반한 자를 처벌토로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89조의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준용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대하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의 처벌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한편, 사용자가 확정된 구제명령에 위반하여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그와 별도로 근로자는 복직시까지 해고기간 동안에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계속 청구할 수 있음.

Q 경기지노위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자의 조치방법

A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사용사업주(도급업체 대표)가 동법 제6조 제3항의 고용의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판정을 하였고, 이에 지방노동관서에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이행지시를 하였음에도 불이행하여 이를 근로기준법 제30조 위반으로 볼 경우, 사용사업주가 근로자를 어느 시점에서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불법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불법파견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사용사업주가 동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시점은 사용업체에서 불법파견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다가 더 이상 해당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파견업체 또는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면서 사용 종료일로 정한 날 또는 실제 사용을 종료한 날의 다음날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한국종합노무법인한솔사무(031-877-7582-3)

법·률·상·담

변호사 **김제동**

【국유재산 중 잡종재산도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Q 저는 30년 전 국가소유의 잡종재산 35평 지상에 무허가 주택 15평을 축조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년 전부터 시 공무원이 과다한 사용료를 제시하며 토지에 대한 대부계약의 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도 20년 이상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하는데, 저도 위 대지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지요?

A 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며,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에서 "국유재산은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잡종재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유재산 중 잡종재산(행정재산과 보존재산 이외의 모든 국유재산)의 경우에는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판례는 "민법 제197조 제2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하나, 통상의 경우 토지를 매수하려는 자는 미리 등기부나 지적공부를 열람하고 매도인의 소유권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상례이므로(1999.5.25. 98다62046), 매수인이 무허가주택과 함께 그 부지를 매수하여 점유를 개시할 당시 그 부지가 매도인의 소유가 아니라 국가의 소유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토지가 매도인의 소유가 아님을 알고 있었던 이상, 그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할 당시에 성질상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 그 토지를 점유한 것으로, 매수인과 그 승계인이 그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점유는 타주점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2000.1.14 99다41893)"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잡종재산인 국유지를 20년 이상 점유하였지만 점유개시 당시에 국유지인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소유의 의사 즉, 사실상 소유자와 마찬가지로 배타적으로 지배하려는 의사로 점유해 왔다고 볼 수 없어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을 취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의 : 변호사 김제동 법률사무소 (031-829-9311)

전·기·상·식

한국전력공사 포천지점 수요관리과장 **나현철**

1. 누전이란?

누전이란 옥내배선이나 전기기계기구의 전선피복이 손상되어 건물의 철근이나 전기기계기구 외함등의 금속부분을 통해 전기가 흐르는 현상을 말합니다.

▫누전의 피해 : 전선의 손상 부위와 금속체의 접촉부분에 신체의 일부가 닿으면 감전사고를 일으킵니다.아울러 전 선과 접촉된 금속체 부위에 열이 발생하여 인화물질에 발화되어 화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누전의 예방대책 : 220V전압공급 지역에서는 누전차단기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110V지역에서도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합선이란?

전선이 낡아 (+)선과 (-)선이 맞닿은 상태로, 이때 아크와 동시에 고열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합선의 피해 : 전기의 양극과 음극으로 된 두전선이 합선되면서 발생되는 고열과 아크로 인해 주위의 인화물질에 착화되어 화재가 발생하게 됩니다.

☞ 합선의 예방대책 : 용량이 큰 전기기계기구를 동시에 여러개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특히 노후배선에서 선이 벗겨져 합선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기설비 관리에 유의해야 하고 과전류 발생시 전기를 차단하는 정격용량의 퓨즈 또는 차단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 용량초과로 인한 피해 : 옥내배선이나 배선기구의 용량을 무시한채 문어발배선 등으로 많은 전기기구를 사용하게 되면 과전류로 인해 전선피복이 녹아 두 전선이 맞붙어 아크와 함께 고열을 발생시켜 화재를 일으키게 됩니다.

☞ 예방대책 : 열을 발생하는 전기기구는 반드시 한 콘센트에 한 개의 기구를 사용해야 하며 전선은 규격전선을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비닐전선은 용량 초과 사용시 위험이 크므로 반드시 규격전선을 사용합시다.

☞문의 : 포천지점 수요관리과(031-539-0231)

여·성·상·식

포천 가족·성 상담센터 **이문환**

Q 임신인가요. 제가 생리가 12월 15일 날 끝났는데요... 생리주기는 30일이고요! 생리기간은 7일 정도 되요. 남자친구하고 성관계를 했는데... 성 관계한 날짜가 12월19일 날 했고, 질외 사정을 했는데... 그래도 임신이 되나요? 제 몸이 임신 한 건지? 아니면 체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자꾸~ 속도 더부룩하고 가슴도 커진 것 같아요? 임신은 아니겠죠?

A 생리주기란 생리 시작 일부터 다음 생리가 시작되는 날까지를 말을 합니다.

12월 15일에 생리가 끝나셨고 일주일간 생리를 하신다면 시작하신 날짜가 12월 8일일 것 같네요. 그리고 다음 생리 예정일은 1월 15일이라고 했을 때.

배란일은 다음 생리예정일로부터 14일로 보는 데 생리주기가 정확하다면 1월 1일을 전후로 전후 7일간을 임신가능기간으로 보고 있으므로 19일 날 관계를 가졌다면 임신의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하지만 생리주기가 거의 정확한 경우라고 해도 심리적인 불안감이나 여러 요인들로 인해서 생리주기가 변하므로 정확한 배란주기를 잡기란 쉽지 않은 일이고, 돌발배란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절대 안전한 피임방법이 아닙니다.

또한, 질외 사정은 질 밖에서 사정을 하여 정자의 유입을 막는 다고 생각을 하지만, 남성이 흥분할 때 나오는 쿠퍼액에도 많은 양의 정자가 들어 있기 때문에 쿠퍼액 만으로도 충분히 임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를 혼자 하는 것이 아니듯 피임에 대해서도 남녀가 함께 할 수 있어야 하고, 남자친구분과 함께 피임에 관한 상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임신은 몸의 증상만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마지막 성관계 후 3주가 지나면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을 거예요. 만약 임신이 되셨다면 임신 이후의 선택에 대해서도 남자 친구 분에게 반드시 알리는 것이 필요하고 서로가 책임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의: 포천가족·성상담센타(031-542-3171)

의·학·상·식

경기도립의료원 포천병원 이비인후과장 **강진욱**

비염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1)

최근 환경오염, 공해의 증가등에 따라 알레르기 비염이 세계적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은 일단 발병하면 그 증상이 사춘기나 성인에 접어들면서 약 20%는 자연 소실되지만 평생동안 지속되는 예가 많아서 적절한 예방과 치료가 중요합니다.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만성 비염의 경우 환경에 따른 재발이 흔해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많은 환자분들이 효과와 안전성이 검증된 이비인후과에서의 치료보다는 민간 요법이나 한방 치료등에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외래에서 보면 비염 증상의 반복에 지쳐서 병원치료를 불신하게 되고 민간요법이나 한방 치료에 기대어 증상의 악화와 많은 비용을 허비한 후에 다시 이비인후과 방문을 반복하는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보면서 비염에 대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알레르기성 비염과 만성비염의 치료에 대해 나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인 치료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알레르기 비염의 치료는 환경요법과 약물요법, 면역요법, 보완요법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 자세한 치료방법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로 하고 제가 시행하고 있는 '4주 비염 치료 코스'의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내시경을 통한 비강내 관찰과 알레르기 항원에 대한 피부반응 검사를 통해 비염의 상태와 원인을 아는 것이 우선입니다.

첫 주 치료의 시작은 7일간의 약물치료로 시작합니다. 이 첫 주의 목표는 빠른 증상의 호전을 통해 환자의 불편감을 최대한 빨리 호전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약물치료와 더불어 코밴드를 착용하게 하여 코막힘의 증상을 빠르게 호전시킵니다. 90%는 이 약물치료와 코밴드 처치로 증상의 호전을 가져오게 됩니다. 7일 후 증상과 비강 점막의 호전양상을 보면서 유지요법을 시행합니다. 약물은 수많은 임상과 동물실험을 통해 안전성과 효과를 인정받은 기존의 알레르기 약물과 가장 최근 개발되어 천식과 알레르기성 질환에 탁월한 효과를 인정받은 신약을 주축으로 합니다.

☞문의 : 경기도립의료원 포천병원 (031-539-9169)

세·무·상·담

세무사 **박운종**

Q 10년 전 상속받은 임야를 과수원으로 이용하던 중 양도를 하였으나, 매매계약 시 매수인과의 공장용지로 형질변경 하여 양도하기로 약정하여 공장허가를 득한 뒤 등기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본인이 농지를 매입하여 계속하여 농사를 짓는다면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한 요건으로는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종전 농지 양도당시 자경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때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는 종전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이거나,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이어야 하며,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합니다.

귀 질문의 경우 지목이 임야일지라도 실제로 과수원이나 작물재배 등 농지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양도일 이전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자경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매매계약 시 약정이 공장허가 등 농지이외의 다른 용도로 변경 후 등기이전을 하기로 하였다면, 매매계약 시 실제 농지로 이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감면신청에 대하여 현지 물건의 이용사실 확인은 물론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토지특성조사표 및 항공사진 등을 확인하여 토지의 이용실태를 명확히 파악하여 감면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감면서류를 성실하게 갖추시기 바랍니다.

☞문의 : 세무사 박 운 종(031-872-6116)

"무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포천신문 골프회 대만 Sunrise Golf & Country Club에서 라운딩 기념

2008년 포천신문 골프회 회원 일동

- 회 장 : 윤종하
- 상 임 고 문 : 최호열
- 고 문 : 한희준 박노현
- 경기위원장 : 박승찬
- 감 사 : 박운종
- 총 무 : 김영복
- 회 원 : 강경만 김경희 김완수 김재명 김정선 박영주 박혜자 성능모 안병호 양종진 이미숙 이상협 이수복 이찬우 임대섭 장재수 정한섭 조정선 차영규 최두열 황광익

2008년 새해 첫 라운딩

일시 : 2008년2월28일 목요일 11:20

장소 : 아도니스컨트리클럽

포천신문 골프회는 포천신문 각 위원회 위원 및 포천신문 임직원을 대상으로 구성되었으며 건전한 골프를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체력향상과 친목을 도모하고 언제나 바르고 깨끗한 뉴스를 전달하는 포천신문 위상에 걸 맞는 품위를 유지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